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다이나믹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[H](주식혼합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
3. 정정사유:
 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이익금 분배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3 조(이익분배)	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‘0’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<u>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‘0’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u> 1. 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 2. <u>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 ② 현행과 같음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글로벌 다이나믹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[UH](주식혼합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
3. 정정사유:
 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이익금 분배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3 조(이익분배)	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‘0’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<u>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‘0’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u> 1. 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 2. <u>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 ② 현행과 같음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퇴직연금글로벌 다이나믹 자산배분 증권투자신탁[H](주식혼합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
3. 정정사유:
 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이익금 분배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3 조(이익분배)	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‘0’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<u>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‘0’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u> 1. 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 2. <u>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 ② 현행과 같음
제 42 조(기타 운용비용 등)	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문구 삭제	④ 집합투자업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를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이 경우 보관수수료는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해외보관대리인간의 합의된 기일과 방법으로 지급한다.	④ (삭제)

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

[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]

1. 집합투자기구명: 베어링 코리아셀렉트 증권투자신탁(주식)
2. 정정대상 서류: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
3. 정정사유:
 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(이익금 분배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 유보)
4. 정정사항: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33 조(이익분배)	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반영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‘0’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②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<u>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‘0’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u> 1. 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 2. <u>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 ② 현행과 같음